



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 辯護士

[Http://www.legalexpert.co.kr](http://www.legalexpert.co.kr)

Tel. 02) 3355-7000 | Fax. 02) 6280-7000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699-16번지 동현빌딩 7층

의료사고중 진단서와 관련된 판례모음

■ 판례 1

환자에게 속아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고의를 인정할수 없다.환자가 허위로 자상을 한후 의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해진단서를 작성케한 경우 그의사에게는 허위진단서를 발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.(대법원1975.1.14.선고 74도 2498판결)

■ 판례 2

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것이 아니고 그 진정성립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(대법원69.3.31.선고 69도 179판결)

■ 판례 3

진료기록부에 없는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면 위법이다.(1993.4.13.92누2141)

■ 판례 4

의학상 확진없이 추측에 의하여 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(대법원1970.3.10선고 70도53판결)

■ 판례 5

진단서상 치료기간을 소급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(의제 1420-70802)

■ 판례 6

엑스레이 소견을 오진하여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과실이다. 건강진단시 엑스레이 소견에 폐암의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방사선과 전문의 소견을 받았으나 내과과장이 소견을 내면서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판정하였음.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을 연장 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도 있음으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서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(서울지법1993.9.22선고92가합49237판결)